영장? 그때 그때 달라요 … 경찰 '고무줄 잣대' 논란

광주경찰,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리 기준 제멋대로

"엄중 대처한다" 방침 속 경찰서마다 자의적 판단 기준 애매해 기각률 높아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이 각 경찰관마다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이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가운데 비슷한 행위를 놓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가 하면,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는 등 자의적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서다.

경찰 구속영장 신청 기준이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11년 5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공무집행사범에 대해선 사실상 구속영장 신청을 해왔다.

하지만, 경찰서마다 구속영장 신청 기준을 달리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형편이다.

서부경찰의 경우 지난 7월 29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두 대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주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2주 진단을 입힌 주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남부경찰은 지난 11일 면허 취소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07% 상태에서 음주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정강이 등을 때리고 도주한 문모(48)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 2일 광산경찰도 만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세대 때린 혐의로 이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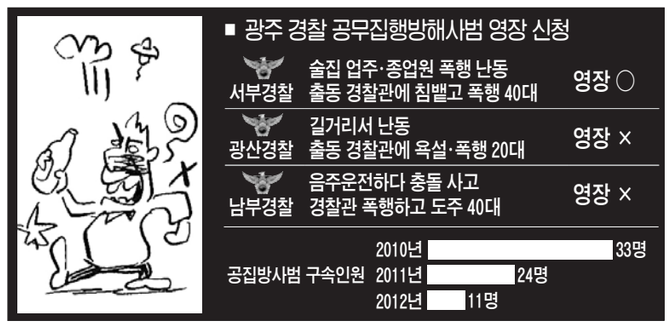

비슷한 사건임에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사건을 맡은 경찰관, 경찰서에 따라 처벌을 달리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칫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리 실적을 의식,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광주광산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경찰을 때렸다고 해서 무조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관이 심하게 다쳤거나 재범이 우려되는 등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감안해 영장을 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에서 공무집행방해사범으로 구속된 이는 모두 68명. 연도별로는 ▲2010년 33명 ▲2011년 24명 ▲지난해 11명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경찰 112 '거북이 출동'

평균 도착시간 6분…광주는 3분25초

전남 경찰이 112 신고를 받은 뒤 사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강원 경찰에 이어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 민주당 의원이 2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지방경찰청별 112 평균 도착시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 경찰은 올 1~7월 112 신고 접수 뒤 현장 출동까지 평균 6분이 걸렸다. 전국 17개 경찰청 중 강원 경찰(6분 40초)을 제외하면 112 신고 접수 뒤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가장 늦은 것으로, 가장 빠른 제주(2분47초)와 서울·충남(3분 24초)에 견줘 2~3분이나 더 걸렸다.

전남 경찰의 경우 2010년 4분 56초였던 112 신고 뒤 평균 현장 도착 시간이 2011년 4분 22초, 2012년 4분 13초로 빨라지는가 싶더니 올해는 무려 6분으로 늦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112 신고의 경우 긴급 출동이 필요하거나 현장 도착 지연에 따른 대응이 늦어지면서 더 큰 사건으로 확대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등 출동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2 접수 시스템을 각 경찰서 112 상황실에서 지방청 단위로 통합하면서 초래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112 신고 뒤 현장까지 평균 도착 시간이 2분37초에 불과, 가장 빠른 것으로 집계됐던 광주경찰청도 올 7월까지 평균 도착 시간이 3분25초로 늦어졌다. 광주지방 경찰청 측은 "지난해 8월까지 20만7816건이던 112 신고 건수가 올해는 37만464건으로 78%가 증가했다"고 했다. 전남지방경찰청도 신고 건수가 다소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

"잘 안보이는디…" 24일 광주시 서구의 한 예식장에서 서구청 주최로 열린 '맞춤형 통합 자원봉사'에서 어르신들이 무료 안과 검사를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실종 40대 매립지서 발견

광주 한 공사현장에서 실종된 40대 노동자가 하루 뒤 10㎞ 넘게 떨어진 폐기물 매립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김모(43)씨가 함평군 월야면 토사 매립지 흙더미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23일 김씨의 실종신고를 접수받고 20여명을 동원해 작업 현장 인근을 수색한 뒤 찾지 못했고 24일 공사 현장에서 13㎞ 가량 떨어진 함평군 월야면에 위치한 건축폐기물 매립지를 찾아가 숨진 김씨를 발견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 2667건…범인 못잡고 시효 끝나

광주 지역에서 지난 5년간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가 26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성폭행 혐의로 지명 수배했다가 공소 시효가 끝나도록 소재 파악 및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도 5건이나 됐다.

한 사건에만 매달릴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피해자 입장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미흡한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아쉬움도 적지 않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이 기소중지(지명수배) 의견으로 송치한 범죄 가운데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은 7만8776건에 달했다. 죄목별로는 살인 12건, 강도 26건, 강간 35건, 방화 18건 등 4대 강력범죄가 91건이나 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의 경우 2008년~2012년까지 강도 1건, 절도, 22건, 폭력 37건 등 2667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지방청도 같은 기간 3340건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을기자 dok2000@

담합으로 쌓은 보·둑·댐 4대강 건설사들 1조원 빼먹었다

3조8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건설사들의 비리로 얼룩진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24일 보(洑)와 둑, 댐 등 4대강 사업의 공사에서 경쟁 입찰을 가장하고 투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형법상 입찰방해)로 대형 건설업체 11곳의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

해당 회사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이다. 대표이사급 중에서는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이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구속 기소된 임원은 현대건설의 설모 전 본부장과 손모 전 전무, 삼성물산의 천모 전 사업부장과 한모 전 임원, GS건설의 박모 부사장, SK건설의 이모 부문장 등 6명이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사업비 3조8000억원인 이번 공사에서 조작한 가격을 써내 손쉽게 수주한 업체들의 낙찰률(투찰금액/공사추정액)이 89.7~99.3% 수준인 점에 비춰 부당이득은 1조원 이상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연합뉴스

쌍나팔

PC방 화장실서 여성 몰래 촬영

○…PC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30대 회사원이 경찰서행.

○…24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나모(33)씨는 지난 11일 밤 9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A PC방에서 화장실을 가는 A(여·22)씨를 몰래 따라가 문틈으로 A씨의 일(?)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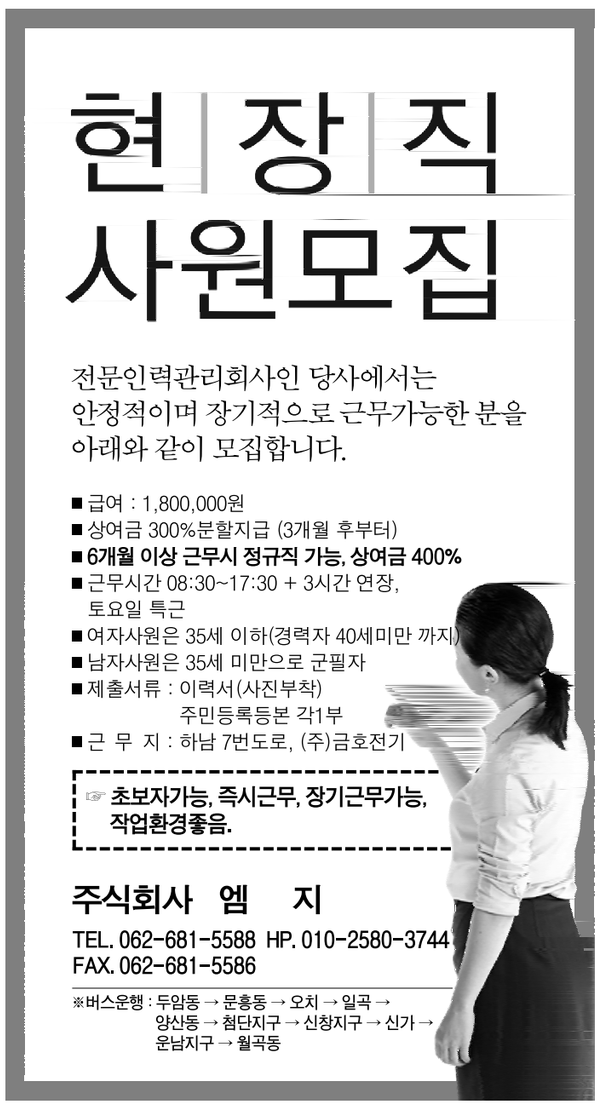
○…그러나 경찰은 나씨가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지 않은데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동영상도 흐릿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 /김용희기자 kimyh@